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0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률 <표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률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안 | |
|--|------|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 0.5 |
| 정 읍 | 0.65 |
| 인천, 울진 | 0.8 |
| 동 해 | 1.6 |
| 속 초 | 2.0 |
| 강 릉 | 3.0 |
| 울릉도, 대관령 |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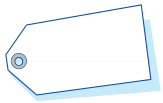
*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건축구조기준 표0304.2.1)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0304.7.1. 비로 인한 추가하중을 “지상적설하중이 1.0kN/m²이하인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 W/15(W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 m)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25kN/m²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추가하중은 평지붕적설하중 또는 경사지붕적설하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적설하중, 부분재하, 국부적설하중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 - 273호

「기술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기술사 교육훈련을 기술사의 등록갱신과 연계함에 따라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4항)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상호인정추진 등 기술사 제도 또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는 국제기술사 자격심사는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의 심사로서 자격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요기간도 단축시키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기술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기술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 현행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날부터 매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규정한 것을,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등록한 후 5년마다 갱신하려고 할 때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개선함.

다. 등록유효기간이 지난 기술사, 자격 취득 후 신규 등록자, 등록취소 후 재등록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추진(안 제12조제2항)

- 등록유효기간이 지나 재등록을 할 경우 재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간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하며,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경우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8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 갱신기간, 갱신 신청기간 등 명시(안 제17조의2)

-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술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마. 기술사 자격등록증 발급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

- 등록·등록의 갱신 신청 접수, 관리 등 기술사 자격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등록, 등록의 갱신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 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규제의 재검토 추진(안 제28조)

- 영 제12조내지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술사의 교육훈련 및 과태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매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제 일몰제 신설

아. 기술사 직무의 종류와 범위 현행화(영 별표1)

- 기술사 자격 등록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자.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기준 등 정비(영 별표2)

- 교육훈련의 종류는 기존과 같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하되 90학점의 교육훈련 이수학점 중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합이 40학점이상 포함되어야하며, 자율학습활동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사항만 인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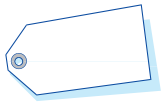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미래인재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19호, 전화 : 02-2110-2579, FAX : 02-2110-0241, E-mail : jksim@msip.go.kr)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절차 등을 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 내용과 처리 절차 등을 정하며, 건축 착공 이후에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단독주택 등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 업무를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며,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의 정의 (안 제3조의3 신설)

“실내건축”을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을 장식하기 위한 재료, 천장 또는 벽에 매달거나 부착하는 선반, 수납장, 환기시설, 등기구 등 시설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재료 또는 시설물로 규정함.

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등 절차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안 제5조의8 신설)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신청한 자가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할 민원 규정 (안 제5조의9 신설)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처리 절차가 불투

명하거나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 건축조례에 대한 해석 및 운영에 관한 민원, 그 밖에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 민원으로 규정함.

마.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사용 (안 제10조의3 신설)

건축공사 착공신고 이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방지 조치, 그 밖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3조의7 신설)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개량·보수, 유지·관리, 건축·대수선에 관한 기술지원과 및 개량·보수 관련 전문 설계 및 건설업체 등의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공무원과 건축 관련 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음방지 층간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53조제2항 신설)

층간바닥을 소음 방지 기준(국토교통부령 신설)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로 규정함.

아.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실내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61조의2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자.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61조의3 신설)

범죄예방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만 해당),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만 해당),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규정함.

차.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 신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휠체어리프트 공간 포함) 및 승강로에 대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여 건축물에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함.

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 처리 절차 등 규정 (안 제119조의3, 안제119조의4, 안 제119조의5 개정 및 안 제119조의6, 안 제119조의7, 안 제119조의8, 안 제119조의9, 안 제119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조정비용의 예치,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

타.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5 제1호 신설)

- 1) 현재의 이행강제금은 일부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건축물 전체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함.
- 2) 앞으로는 위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읍·면 지역 등 위반사항이 공중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부과 금액의 5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부과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

파.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안 별표 16 개정)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이하(중전 30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회수(1차, 2차, 3차)별 금액을 조정함.

건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건축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 분쟁 조정을 신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절차 규정(안 제2조의4 신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고시(안 제26조의5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실내건축(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내부 장식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절차 규정(안 제41조제4항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용벽·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공작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건축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 범위 규정(안 제43조의4 신설)

건축분쟁 조정과 관련한 감정·진단·시험 비용, 검사·조사 비용 및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으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가구·세대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세부 층간바닥 구조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19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9월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
| 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11조,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라.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5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마.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바.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사.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아.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차.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카.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파.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3.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50 | 100 | 200 |
|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라.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1호 | 30 | 60 | 100 |
| 마.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2호 | 30 | 60 | 100 |
| 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3호 | 30 | 60 | 100 |
| 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4호 | 30 | 60 | 100 |
| 아.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5호 | 30 | 60 | 100 |
| 자.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6호 | 30 | 60 | 100 |
| 차. 법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7호 | 30 | 60 | 100 |
| 카.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8호 | 30 | 60 | 100 |
| 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9호 | 30 | 60 | 100 |